

## 1999년도 산업기술개발 융자금 지원안내

산업자원부 고시 제 1999-8호(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 : '99. 1. 21) 및 동공고 제1999-20호 ('99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지침 : '99. 1. 21)에 의거, 본회의 자금지원부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1. 지원규모 및 대상

#### 가. 지원규모

- 자본재시제품개발사업 분야 : 총 2,260억 원 중 전자분야 300억 원
- 첨단 기술제품 사업분야 : 총 607억 원 중 S/W 및 D/B분야 100억 원

#### 나. 융자대상

##### 1) 자본재 시제품 개발 사업 분야

- 산업자원부장관이 자본재산업육성 관련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 1998-133호 : '98. 12. 31)한국산화 대상 핵심자본재 품목의 개발사업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사업
-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신기술 및 신제품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본재 품목의 개발사업

##### 2) 첨단 기술제품 개발 사업 분야

- 첨단 기술 및 제품의 범위(통상산업부 고시 1996-389호, '96. 10. 15)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 사업
-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첨단기술제품의 개발사업

### 2. 융자조건 및 한도

#### 가. 현물담보의 경우

대출금리	융자기간	융자비율	과제당 한도액
연 7.0%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소요자금의 80%이내	30억 원이내

\* 단, 대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나. 기술담보의 경우

대출금리	융자기간	융자비율	과제당한도액
연 7.5%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소요자금의 80%이내	30억 원이내

\* '99년 기술담보 대상자금(산업기술개발자금,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중 500억 원 이내에서 기술담보 대출할 예정임.

\* 기술담보 신청 및 접수문의  
산업기술정책연구소 산업기반담보실  
(전화 : 02-8298-7235)

### 3.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 가. 신청방법

##### 1) 신청 및 접수기간

- 3차에 걸쳐 연중 신청서를 접수, 융자사업자를 선정, 지원
  - 제1차 : '99. 2. 13까지
  - 제2차 : '99. 5. 15까지
  - 제3차 : '99. 8. 7까지

##### 2)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개발표준팀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8 전자회관 12층
- 전화 : 02-553-0941, 565-5803 (교환 : 381-383)

3) 취급은행 :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과 자금대여약정을 체결한 한국산업은행, 주택은행, 농수축협,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 4) 신청서류

- 가) 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최근년도)
- 다)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관할세무서장 확인본)

#### 5) 신청서양식 및 전략품목리스트

- 인터넷 : [www.eiak.org](http://www.eiak.org) KOREAN 99 산업기술 개발자금 신청 안내
- 하이텔 : 14.자료실 9.생활/일반 2.경영/경제
- 천리안 : 11.공개자료실 8.워드/문서 7. 기타 워드프로세서관련/양식
- 나우누리 : 14.자료실 7. 업무교육 4. 업무/교육 관련문서

#### 나. 지원 우대조치(증빙서류 제출업체에 한해 적용)

-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총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가 설치된 중소기업
- 수급기업간 개발을 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수요가 보장된 품목
- 산·학·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 국산화대상핵심자본제 품목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133호, '98. 12. 31)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되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 개발하는 경우

#### 다. 지원 제외대상

- 동일과제로 지원 받은 사업자
- 금융기관에 의한 여신제재자
- 자금사업에 참여제한조치를 통보 받고 참여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사후관리 비협조자

#### 4. 기타

가. 제3차 접수마감일 이후 접수분은 다음 년도 제1차 사업자선정시 심의 지원하되, 사업년도 내에 미활용 자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신청 사업자 중 융자사업자로 선정 지원할 수 있음.

나. 자본제 시제품개발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국산화 대상 핵심자본제 품목에 80%를 지원하고, 기타 일반품목에 대하여 20%를 지원할 계획임.

#### 1999년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과제 공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1999년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1차 신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기술과제를 개발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란 신기술개발을 조건으로 무담보, 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개발완료후 성공시 정부지원금액의 일부만을 상환받는 사업이다.

#### 1. 지원대상분야

-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 상기에 열거된 230개 산업기술분야

## 2. 지원조건

- 99년 1차신규 지원제도 : 350억원
- 지원범위 : 총개발비의 2/3(벤처기업은 3/4)까지 지원(지원금액은 과제당 평균 연 1.2억원 내외)
- 개발기간 : 3년이내

## 3. 신청요령

### 가. 신청자격

- 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  
(단, S/W업체, 엔지니어링전문업체 및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는 예외로 인정)
- ②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민간생산기술연구소
- ③ 대학, 전문대학 및 개방대학
- ④ 산업디자인진흥원 및 전문회사, 산업기술정보원, 한국생산성본부
- ⑤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연구법인
- ⑥ 공업발전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
- ⑦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 ⑧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우선지원과 특례적용대상이 되는 소기업
-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지원대상기업

### 나. 신청방법

- 신청양식 : 별도양식 참조
- 신청분야 : 공고된 각 기술분야별 개발내용 및 범위의 전부 또는 일부
- 상세 개발 목표 및 내용(RFP)은 인터넷 참조

### 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인터넷 : <http://www.itep.re.kr>
  - 하이텔 : 자료실 9.생활/일반 1.과학/기술 Li itep1
  - 천리안 : 공개자료실 8.워드/문서 7.기타 워드프로세서 관련/양식 from itpc1

### · 신청서 접수

- 인터넷([www.itep.re.kr](http://www.itep.re.kr))으로 전산양식 등록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증빙서류는 우편접수(마감일 우체국소인 유효)하여야 함
- 주소 : (우156-010)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67, 롯데관악타워6층 산업기술정책 연구소 섬유화학실

### 라. 유의사항

-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벤처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지방중소기업청)
- 기술료는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개발종료 시점에서 정부출연금의 50%를 5년(중소기업 주관과제는 30%를 3년)균등분할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비징수과제로 공고되었으나 심의시에 기술료징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시에 개발결과의 공동 활용계획을 상세히 제출하여야 함.
- 기술료비징수과제는 참여기업없이 수행 가능함.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중소기업이 주관하면서 타 기관에 위탁하는 공동연구
  - 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제외한 지방중소기업

또는 기술개발 취약지역 (강원, 충북, 전남북, 광주, 제주) 소재 주관기관 (대기업 제외)이 신청한 경우

- 이달의 무역인상 수상기업이 주관하는 경우

####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 기 지원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이내의 기업(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는 예외)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 (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마. 안내사항

- 차세대기술개발사업 및 중기거점개발사업(연구 기획)은 '99년 2월경에, 공통핵심기술 개발사업 중 자유응모과제는 '99년 4월경에 공고할 예정임.

#### 바. 문의처

- 세부 기술개발내용 등 상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정책연구소에 문의
  - 기계, 금속, 광학 및 기반기술분야 : 02-8298-661/9
  - 화학, 화공, 환경산업, 섬유분야 : 02-8298-671/9
  - 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 S/W분야 : 02-8298-681/9

1999년도 기술담보사업지원안내

#### 1. 기술담보사업이란?

공업 및 에너지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기술을 담보로 평가액만큼 기업에 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로써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임.

#### 2. 담보대상기술의 범위

특허법, 실용신안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특허청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프로그램 저작권

#### 3. 대상자금 및 지원규모

- 대상자금 : 산업기반기금, 산업기술개발자금,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 지원규모 : 500억원
- 산업기반기금 : 추후지원안내 공고 예정임
- 산업기술개발자금 : '99지원안내공고('99. 1. 22 경제지)
-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지원팀 문의(Tel : 02-769-6871~78)

#### 4.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상의 중소기업으로, 기술담보 대상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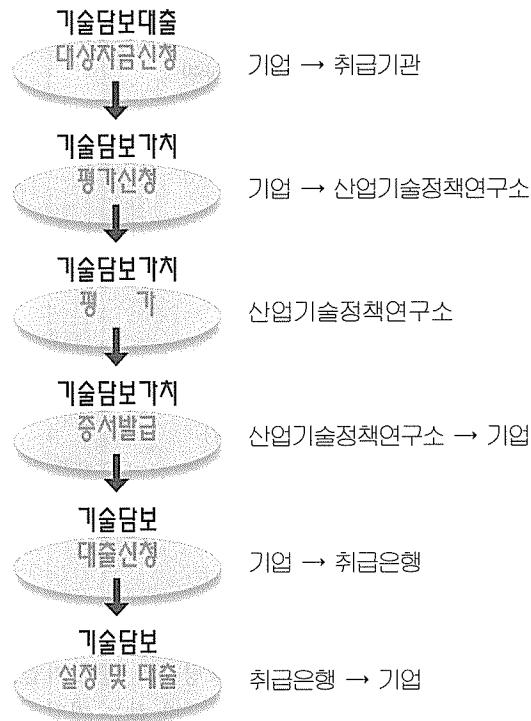
#### 5. 용자조건

- 지원금리 : 기술담보대상자금의 용자금리에 0.5%가산금리 적용
- 용기간 :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기타 용자조건은 기술담보 대상자금 용자조건에 따름.

#### 6. 신청방법

- 신청서 교부, 접수 및 문의사항 안내
- 산업기술정책연구소(ITEP) 산업기반부 산업기반담보실
-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67(우 156-010)  
Tel : 02)8298-722/7, Fax : 02)8298-808
- 접수기간 : 연중수시

## 추 진 절 차



※인터넷 이용안내 : <http://www.itepre.kr>  
(신청서 양식제공 및 사업내용 상세히 안내)

### 7. 기술담보 대상자금 취급기관 및 취급은행

#### ❖ 기술담보대상자금 취급기관

산업기술정책연구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기공업진흥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이상 산업기반 기금 및 산업기술개발자금 취급기관) 한국신발산업협회, 한국센서연구조합,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한국표준협회, 한국포장협회, 중소기업청, CALS/ES협회, 영화진흥공사(이상 산업기반 기금 취급기관), 산업디자인진흥원, 한국정밀화

학공업진흥회(이상 산업기술개발 용자금 취급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상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 취급기관)

※ 담보가치평가 신청서 제출이전에 대상자금 신청 및 추천 가능여부를 해당자금 취급기관에 반드시 사전확인 바랍니다.

#### ❖ 기술담보 취급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국민/하나/신한/외환/한미은행(5개 시중은행) 및 강원/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충북은행(7개 지방은행)

※ 상기 취급은행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도 있음.

#### 하도급대금 지급시 어음할인율 인하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시중은행의 상업어음할인율과 시중금리가 대폭 하락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때 적용하는 어음할인율을 IMF이 전수준인 연 12.5%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 시행시기 : 1999년 1월 1일부터 교부되는 어음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98. 5. 12 고시된 현행 어음할인율 : 어음의 만기가 90일 이내인 경우 연 17%, 90일 초과인 경우 연19%)

※ 시중은행의 어음할인율 추이

구 분	'97.11	'98.1	'98.5	'98.6	'98.7	'98.8	'98.9	'98.10
어음할인율 (연.%)	12.28	18.22	17.30	16.76	15.78	15.25	14.16	12.76